

# 2021 환경창업대전(Eco+ Start-Up Challenge 2021) 참가자(팀) 모집 공고

환경분야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환경창업 아이디어·창업자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I 개요

### □ 목적

- 기후·환경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유도 및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 문화 확산 도모
- 유망 환경사업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스타 창업기업으로 육성하여 환경 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내용

- (접수기간) 2021. 4. 12.(월) ~ 5. 14.(금), 16:00까지
- (신청방법)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참조(환경창업대전 운영사무국(02-6395-3121))
- (주 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 최) 환경부
- (후 원) 인천시·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기업협회

## II

## 모집부문 및 참가자격

### □ 모집부문 및 자격

| 공모부문      |     | 참가자격                                 |
|-----------|-----|--------------------------------------|
| 환경창업      | 일반부 | 청년을 제외한 예비창업자(팀)                     |
| 아이디어      | 청년부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살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
| 환경창업 스타기업 |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 (청년의 적용 기준) 대표자에 한해 적용(팀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창업일의 적용 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 연월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 세부사항 「별첨 1」 참조  
- 2개 이상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

### □ 참가 제외대상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을 포함, 창업기업은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 '18~'20년도 "환경창업대전" 수상자(팀) 및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0"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 수상자 제외)
- 예비창업자(팀)인 경우 대표자는 예비창업자여야 하며,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향후 참가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 Ⅲ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14일(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2~3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는 신청 시 제출,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제출
  - 접수 시 제출서류(부문공통) :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④ 가점 증빙서류
- ※ 자격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21.3.29.)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서류평가 후 제출(합격자 대상) : 신분증,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증빙 서류 등

-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 마감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 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팀)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IV

# 평가절차 및 내용

### □ 평가절차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175팀, 7배수 선발)  
※ 가점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적용
- (발표평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25팀, 수상팀 최종 선발)
  - 1) 참가팀의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수상자(팀)에 대한 선발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결선) 2차평가 점수 상위순위 8팀(아이디어(청년+일반) 4, 스타기업 4)에 대한 최종훈격 결정

### □ 평가내용

- (평가기준)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창업자 보유역량, 사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분       |      | 내용                                  |
|----------|------|-------------------------------------|
| 평가<br>기준 | 아이디어 | - 창업자 의지 및 팀원 역량, 실제 창업 가능성 등       |
|          | 스타기업 | - 기술성, 시장성 및 기술개발 역량, 사회적 가치 등      |
|          | 공 통  | - 녹색 혁신성장(그린뉴딜, 탄소중립, 기후환경) 등       |
| 가 점      |      | -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점 부여(「별첨 2」 참조) |

-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 등 비대면 평가 진행 예정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V

## 시상 및 후속지원

### □ 시상규모

- (환경창업 아이디어) 총 12팀 수상, 총상금 3,700만원 규모 지급

| 구분    | 훈격         | 부상(수량)        |             | 비고              |
|-------|------------|---------------|-------------|-----------------|
|       |            | 청년부           | 일반부         |                 |
| 대 상   | 환경부장관      | 상금 1,000만원(1) |             | 최종결선 진출팀 (순위결정) |
| 최우수상  |            | 상금 700만원(1)   |             |                 |
| 우 수 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상금 500만원(2)   |             |                 |
| 장 려 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상금 200만원(1)   | 상금 200만원(1) | -               |
| 입 선   |            | 상금 100만원(3)   | 상금 100만원(3) |                 |

※ 상금에서 세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

- (환경창업 스타기업) 총 13팀 선발, 총상금 7,100만원 규모

| 훈격(수량)   | 훈격         | 부상         | 비고              |
|----------|------------|------------|-----------------|
| 대 상(1)   | 환경부장관상     | 상금 2,000만원 | 최종결선 진출팀 (순위결정) |
| 최우수상(1)  |            | 상금 1,000만원 |                 |
| 우 수 상(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상금 700만원   |                 |
| 장 려 상(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상금 500만원   | -               |
| 입 선(6)   |            | 상금 200만원   |                 |

※ 상금에서 세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

- (후속지원) 수상자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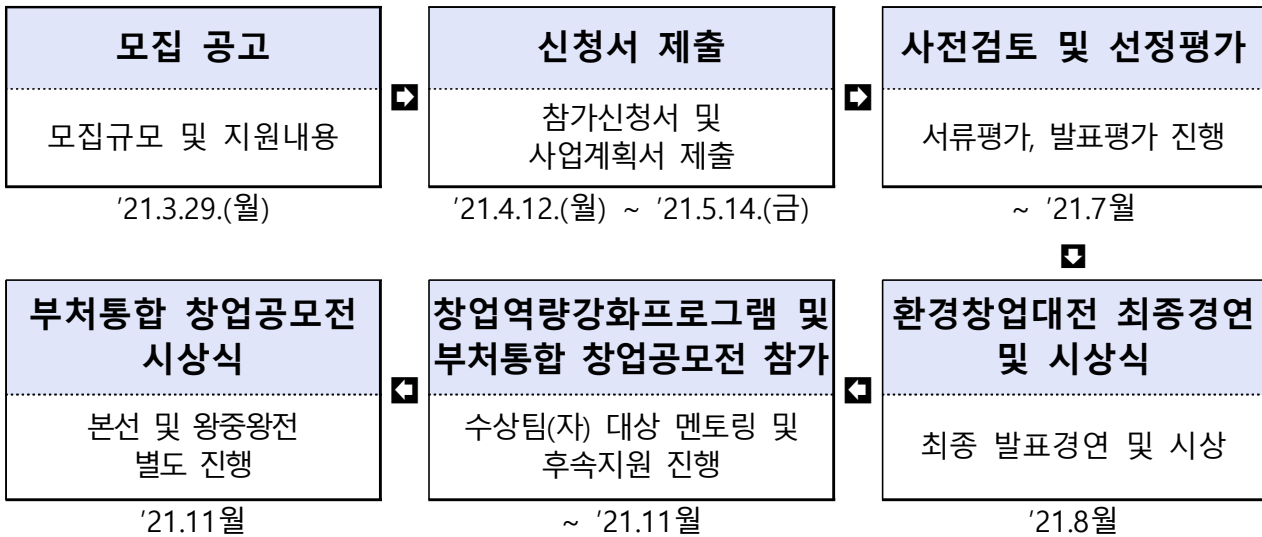
- 멘토링, IR역량강화, 네트워킹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기관(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설명회를 통한 상담 연계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

### ○ 특 전

- 부처통합 창업공모전 「도전! 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팀 추천(15팀)  
 ※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추천의 경우, 「2021 환경창업대전」 최종선발 기업 중 최종 성적순으로 총15팀 추천(부분별 추천비율은 조정 가능)
- 환경벤처센터·환경창업랩 입주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제공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2점 제공

## VI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VII

## 유의사항

###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환경창업대전에서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 [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선착순 지원)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2021 환경창업대전 참가자(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타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경진대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 □ 창업여부 기준

| 신청기업 구분       |                   | 상세 구분               |                                   | 개정 시행령<br>(20.10.8.) |      |    |
|---------------|-------------------|---------------------|-----------------------------------|----------------------|------|----|
| 상속/증여         | 공동<br>(개인,법인)     | 동종업종 유지             |                                   | 창업아님                 |      |    |
|               |                   | 이종업종 창업(또는 신규 법인설립) |                                   | 창업                   |      |    |
| 창업이력 없음       | 공동<br>(개인,법인)     | -                   |                                   | 창업                   |      |    |
| 창업이력 있음       | 개인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 창업아님 |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 창업 |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
|               |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                                   | 창업                   |      |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 창업                   |      |    |
|               | 법인기업              | 자회사 여부              |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최대주주 |                      | 창업아님 |    |
|               |                   | 조직변경                | 동종업종 유지                           |                      | 창업아님 |    |
|               |                   |                     | 이종업종 변경                           |                      | 창업   |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 창업 |
|               |                   |                     | 동종창업                              | 동일인인 경우              | 창업아님 |    |
|               |                   |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 창업                                |                      |      |    |
|               |                   | 최대주주 아님             | 창업                                |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 이종창업                | -                                 |                      | 창업   |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 창업                  |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 창업                   |      |    |
|               | 동종창업              | -                   |                                   | 창업                   |      |    |
|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 창업                   |      |    |
|               | 동종창업              | -                   |                                   | 창업                   |      |    |

##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별첨 2 가점사항

### □ 서류평가 세부 가점 항목(서류평가 시 적용)

|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
|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br>※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다수의 지재권도 1점 한 건으로만 인정) | 1점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별첨 3 제출서류 안내

| 구분        | 제출서류    |  |
|-----------|---------|--|
| 환경창업 아이디어 | 접수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li> <l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li> <li>■ 참가서약서</li> <li>■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li> </ul>   |
|           | 2차 평가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br/>*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학생증 불가)</li> <li>■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li> <li>2)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 여부(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li> <li>3)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li> </ol> </li> <li>■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li> </ul>  |
| 환경창업 스타기업 | 접수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li> <l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li> <li>■ 참가서약서</li> <li>■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li> </ul>   |
|           | 2차 평가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li> <li>■ 자격요건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li> </ul> </li> <li>■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li> <li>2)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 여부(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li> <li>3)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li> <li>4)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li> </ol> </li> <li>■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li> </ul> |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문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참고 부처통합 창업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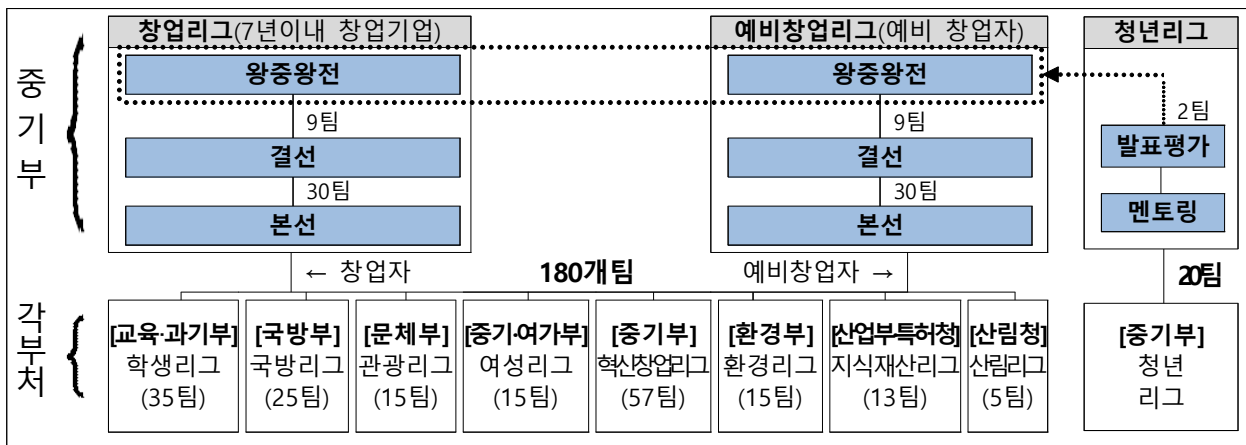
## □ 목적

-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

## □ 대회 운영 방식

-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선발 후 통합본선 진출 대상자 추천
- 본선 진출팀 중 창업 여부(통합 공고일 기준)에 따라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로 구분, 결선·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21 운영 절차 >



## □ 대회 운영 일정

